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356
----------	-----

제출년월일 : 1998.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재난관리법('97. 8. 30) 및 동법시행령('98. 2. 24)의 개정으로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을 자치단체가 적립 하도록 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철저한 재난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가.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조성(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적립금,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함(안 제2조)
- 나.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 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보수·보강, 임대주택이주비등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사용토록 용도를 정함(안 제4조)
- 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토록 함(안 제5조제2항)
- 마.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시의회에 제출토록 정함(안 제7조제2항)

제7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파주시의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파주시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한국은행법제10조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저축 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재난관리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제54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용도
2. 기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인정하는 사업비

②영제54조제2항제1호및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주시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5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기금분입운용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이 되고, 기금분입운용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되며, 기금출납공무원은 재난관리계장이 된다.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등에 관하여는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第55條(補償 및 治療) ①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緊急救助活動에 참여한 民間 緊急救助機關의 緊急救助要員과 第39條 및 第40條(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應急措置 종사명령을 받은 者가 緊急救助 또는 應急措置 종사중 負傷을 입은 때에는 治療를 실시하고, 死亡(負傷으로 인하여 死亡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에는 그 遺族 또는 장애를 입은 者에게 補償金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法令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補償金을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는 그 補償金에 상당하는 金額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治療 및 補償金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과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6條(災難管理基金의 積立) ①地方自治團體는 災難管理에 소요되는 비용에 充당하기 위하여 매년 災難管理基金을 積立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災難管理基金의 매년도 最低 積立額은 최근 3年동안의 地方稅法에 의한 普通稅의 收入決算額의 平均年額의 1千分の 2에 해당하는 金額으로 한다.

第57條(災難管理基金의 運用등) ①災難管理基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災難의 豫防 및 應急措置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災難管理基金에서 생기는 收入은 그 전액을 災難管理基金에 편입하여야 한

다.

②災難管理基金의 運用·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8條(權限의 위임·委託) ①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의 權限은 緊急救助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市·道の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消防本部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第34條 내지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市長·郡守·區廳長의 權限은 緊急救助에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消防署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9章 罰 則

第59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圓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正當한 사유없이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者
2.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3. 正當한 사유없이 第36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警戒區域에의 出入 기타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에 위반한 者

第60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圓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待避命令에 위반한 者

2.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역	되는 소관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매년 일제조사 및 수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응급조치 및 재난의 수습을 위한 각종 조치의 내용, 수습계획 및 수습상황	②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소관 시설 및 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4. 재난의 결과	1. 재난위험시설 및 재난위험지역 : 긴급히 보수·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
5. 기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처(이하 "주무부처"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사항	2. 중점관리대상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지역 :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규모, 이용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②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위험시설 및 재난위험지역(이하 "재난위험시설등"이라 한다)과 중점관리대상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시설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등 및 중점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재난위험시설등 및 중점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재난의 발생상황	제21조(재난위험시설등 및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관리지침)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기치단체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관
2. 중앙긴급구조본부에서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휘·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의 발생상황	제22조(재난위험시설등의 지정·관리지침) ②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위험시설등 및 중점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긴급구조본부의 본부장이 현장지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난의 발생상황	제23조(재난위험시설등의 지정·관리지침) ③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방기치단체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관
4. 기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4조(재난위험시설등의 지정·관리지침) ④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방기치단체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관
③재난상황보고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이 영 및 내무부령에서 규정한 것외에 재난상황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처의 장이 정한다.	제25조(재난위험시설등의 지정·관리지침) ⑤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방기치단체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관
제3장 재난의 예방	제26조(재난위험시설등의 지정·관리지침) ⑥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방기치단체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관
제20조(재난위험시설 또는 지역의 지정) ①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제27조(재난위험시설등의 지정·관리지침) ⑦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방기치단체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관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동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인 때에는 이를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며, 태아는 그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53조(치료 및 보상금 지급절차) ①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자의 치료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5의 규정은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인진대책위원회”로, “시·군·구”는 “지방자치단체”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전대책위원회”로 본다.

제5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①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외의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등(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등에 한한다)의 인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2. 제2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시설등(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시설등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3.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4.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

5.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6.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용자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제5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193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災難管理法施行令 改正理由

민간 緊急救助要員 등에 대한 補償制度의 導入 등을 위하여 災難 管理法이 改正(1997. 8. 30, 法律 第5404號)됨에 따라 災難 管理計劃의 수립절차와 민간 緊急救助要員 등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治療 및 補償基準을 정하는 한편, 災難이 발생될 위험이 있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待避 또는 退去命을 하는 때에는 그 사유 및 이행기간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同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효율적인 災難管理業務의 추진을 위하여 中央行政機關에서 國家災難管理計劃을 수립하고, 市·道 및 市·郡·區에서 地域 災難管理計劃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그 계획수립의 시기 및 절차 등을 정함(令 第15條 내지 第17條).

나. 災難豫防을 위하여 각급 災難管理責任機關의 長은 소관 施設에 대하여 일제조사 및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정도에 따라 災難危險施設 및 災難危險地域 등으로 지정·고시하고 정기적

으로 安全點檢을 실시하도록 함(令 第20條·第21條 및 第23條

내지 第27條).

다. 災難이 발생될 위험이 있어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이 당해 지역의 주민 등에 대하여 待避 또는 退去命을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 및 이행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하며,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待避 또는 退去命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당해 地域을 지속적으로 巡察하도록 함(令 第38條 및 第39條).

라. 災難의 발생 등으로 應急措置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어 市長·郡守·區廳長 등이 災難現場의 인근에 있는 자와 전문기술자를 應急措置에 종사하도록 한 경우 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적절한 治療 및 補償을 위하여 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令 第51條 내지 第53條).

마. 地方自治團體에서 조성하는 災難管理基金의 용도를 災難危險 施設의 安全診斷과 보수·보강 등 災難의 豫防 및 應急措置 등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災難管理基金의 運用·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도록 함(令 第54條 및 第55條).

<법제처 제공>

權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免除하거나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不利하게 效力을 變更할 수 없다.

第108條 (管理의 방법등) ①債權의 管理에 관한 事務는 債權의 發生원인 또는 내용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의 이익에 가장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소관에 속하는 債權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債務者・債權金額 및 履行期限 기타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帳簿에 기재하고, 그 管理의 徹底를 기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債務의 管理에 관하여도 이를 準用한다.

第4節 公共施設 및 基金

第109條 (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 ①地方自治法 第135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公共施設을 設置함에 있어서 그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國庫에서 補助받아야 할 公共施設에 관한 條例는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거쳐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內務部長官은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승인에 앞서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公共施設의 효율적인 管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외의 者에게 委託하여 그 公共施設을 管理하게 할 수 있다.

第110條 (基金의 運用등) ①地方自治法 第13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하는 基金은 條例로 정하는 특별한 目的을 위하여 積貯하고 효율적으로 運用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의 支援를 目的으로 하는 基金의 경우에는 그 基金의 造成을 위하여 地方債를 발행할 수 있다. <新設 91.12.31>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會計年度마다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야 하며, 出納閉鎖後 3月이내에 基金의 決算報告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計劃書와 基金決算報告書를 每 會計年度마다 各 歲入・歲出豫算案 또는 決算書와 함께 地方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1.12.31>

⑤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事務의 일부를 소속公務員에게 위임하거나 地方自治團體외의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委託받은 事務를 담당하는 者의 책임에 관하여는 第

(추 56)

115條 및 會計關係職員등의責任에 관한法律을 準用한다. <新設 94.12.22>

第11章 會計關係公務員

第111條 (出納員) ①出納員은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이 소속公務員중에서 任命한다.

②出納員은 法令・條例 및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現金 또는 物品을 出納・보관하여야 한다.

③出納員은 收入金出納員・日常經費出納員・歲入歲出外現金出納員 및 物品出納員등으로 나눈다. <改正 91.12.31>

第112條 (會計關係公務員의 任命 또는 委任) 徵收官・經理官・財産管理官・物品管理官・債權管理官・債務管理官・支出員 또는 出納員과 그 代理者・分任者等 (이하 “會計關係公務員”이라 한다)의 任命 또는 委任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所屬機關에 設置된 官職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第113條 (會計關係公務員의 代理와 分任)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會計關係公務員의 事務의 전부를 代理하거나 그 일부를 分掌하는 公務員을 任命 또는 委任할 수 있다.

第114條 (會計關係公務員의 任命特例)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事務遂行上 필요한 경우에 國家機關 또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을 당해 所屬機關의 長의 同意를 얻어 會計關係公務員으로 任命할 수 있다. <改正 94.12.2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會計關係公務員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며, 會計에 관한 法令중 당해 事務의 취급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15條 (會計關係公務員의 責任) ①會計關係公務員이 그 職務를 행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그 地方自治團體에 損害를 끼친 때에는 辨償의 責任을 진다. 物品을 사용하는 公務員이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사용중인 物品을 亡失하거나 훼손함으로써 그 地方自治團體에 損害를 끼친 때에도 또한 같다.

②出納員과 그 出納事務를 代理 또는 分任하는 者가 그 보관에 속하는 現金 또는 物品을 亡失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善良한 管理者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證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辨償의 責任을 진다.

第116條 (會計關係公務員의 財政保證) 會計關係公務員은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한 財政保證이 없이는 그 職務를 담당할 수 없다.

(주 56)

第132條 (經費의 支出) 地方自治團體는 그 自治事務의 수행에 필요한 經費와 委任된 事務에 관하여 필요한 經費를 支出할 義務를 진다. 다만, 國家事務 또는 地方自治團體事務를 委任하는 때에는 이를 委任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그 經費를 부담하여야 한다.

第4節 財産 및 公共施設

第133條 (財産 및 基金의 設置) ①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또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財産을 보유하거나, 特정한 資金의 運用을 위한 基金을 설치할 수 있다. <改正 94.3.16>

②第1項의 財産의 보유, 基金의 設置·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改正 94.3.16>

③第1項에서 “財産”이라 함은 現金외의 모든 財産的 價値가 있는 물건 및 權利를 말한다.

第134條 (財産의 管理 및 處分) 地方自治團體의 財産은 法令 또는 條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交換·讓與·貸與하거나 出資 또는 支給의 手段으로 사용할 수 없다.

第135條 (公共施設)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祉를 增進하기 위하여 公共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에 관하여 다른 法令에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條例로 정한다.

③第1項의 公共施設은 관계地方自治團體의 同意를 얻어 그 地方自治團體의 區域밖에 設置할 수 있다.

第5節 補 則

第136條 (地方財政運營에 관한 法律의 制定) 地方自治團體의 財政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137條 (地方公企業의 設置·운영)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祉增進과 事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地方公企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地方公企業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138條 削除 <94.3.16>

第8章 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關係

(주 46)

金融通貨運營委員會委員은國家公務員의身分을가진다.

(全文改正 62.5.24)

第9條 財務部長官은金融通貨運營委員會會議의議長이된다.

財務部長官이事故가있을때에는韓國銀行總裁, 財務部次官, 韓國銀行副總裁의順位로議長이된다.

(全文改正 62.5.24)

第10條 이法에서金融機關이라함은預金의受入, 有價證券또는其他價務證書의發行에依하여一般民衆으로부터價務를負擔함으로써獲得한資金을貸出하는業務를規則的, 組織的으로營爲하는韓國銀行및韓國產業銀行以外の모든法人을말한다. <改正 62.5.24, 68.7.25>

農業協同組合中央會, 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와 그會員인 水產業協同組合 및 畜產業協同組合中央會의信用事業部門은 1個의金融機關으로본다. 다만, 第85條에規定된事務를遂行하는範圍內에서는政府代行機關으로본다. <改正 68.7.25, 82.12.31>
保險會社와相互信用金庫業務또는信託業務만을營爲하는會社는金融機關으로보지아니한다. <改正 77.12.30>

第11條 財務部次官과 韓國銀行의 銀行監督院長및副總裁는 金融通貨運營委員會會議에列席할수있다. 다만, 表決權은없다. <改正 68.7.25, 77.12.30>

(全文改正 62.5.24)

第12條 金融通貨運營委員會委員에關員이生한때에는關員된委員의任命과同一한方法으로新委員을任命한다. 다만, 新委員의任期는關員된委員의殘任期間으로한다. <改正 68.7.25>

第13條 委員의任期가滿了되는때에는늦어도그任期가滿了되기30日前에그後任者를任命하여야한다.

委員은重任될수있다. <改正 62.5.24>

第14條 다음各號의1에該當하는者는金融通貨運營委員會의委員이될수없다. <改正 77.12.30, 82.12.31>

1. 大韓民國國民이아닌者
2. 年齡이30歲未滿인者
3. 政黨에加入한者
4. 國會議員, 地方議會議員, 國家公務員또는地方公務員. 다만, 第8條第1項第

(추 75)

경 기 도

모사전송	
송신자	410-2
전송번호	382

우편 441-701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 / ☎(0331) 42-4599 / 담당 김진섭

문서번호 재난 14001 - 146
 시행일자 1998. 3. 6. (년)
 (경 유)
 발 읍 받는곳참조
 참 조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선	과장	지		
접	일 자	98.3.9	계상	916
수	시 간			
	번 호	128		
처	리 과			
담	당 자	이득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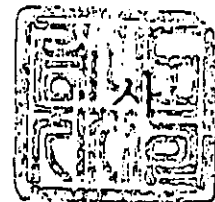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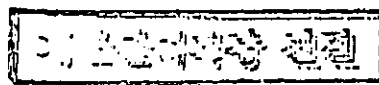
제 목 도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제정(안)승부

1. 재난14001-652('97.9.26) 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포와 관련 재난관리 기금의 적립 및 효율적 운영과 재난의 사전예방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중인 도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승부하니 시군 조례 제정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확정 공포된안이 아님을유의)

덧붙임 :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 1부 끝

경 기 도 지

받는곳 러



경기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

□ 제정이유

재난관리법('97. 8. 30) 및 동법시행령('98. 2. 24)의 개정으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을 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철저한 재난관리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조성(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적립금,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함(안 제2조).

나. 기금은 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 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보수·보강, 임대주택 이주비등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사용토록 용도를 정함(안 제4조).

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토록 함(안 제5조제2항).

마.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도의회에 제출토록 정함(안 제7조제2항).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54조, 제55조
- 지방재정법 제110조
- 지방자치법 제133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상황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98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재난관리기금 적립
예산액 3,402백만원 요구 예정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기타참고사항

- 내무부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
- 내무부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용대책강구 공문사본(제총 14001-196,
'97. 9. 23)

경기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경기도의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도지사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도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재난관리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용도
2. 기타 도지사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기금으로 용자할 수 있다.

제5조(회계공무원) ①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지방위재난관리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총괄계장이 된다.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①기금의 수입 및 지출등에 관하여는 경기도재무 회계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등) ①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